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에 관한 소고(小考)

본 내용은 (기칭)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로 국내에서는 쉽게 접해보지 못하던 내용이어서 2회에 걸쳐 미소공에 소개하려고 합니다.—편집자

글_정 광 섭(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방 승 기(경민대학 건축설비과 교수)

3. 인터넷을 통해 보금증 화장실

[그림 13]은 일본의 관광 안내의 홈페이지에 나온 우리나라 동대문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대한 설명으로 비교적 좋지 않은 것을 보여 주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는 캐나다에서 작성된, 일본의 관광에 대해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이다. 그 중 내용의 일부분이 화장실에 대한 것으로 일본의 화장실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홈페이지는 전반적인 일본 여행에 대한 안내로, 관광지, 쇼핑, 철도 및 공중전화 이용법과 같이 실질적인 관광 안내를 해주는 홈페이지로 여기서 일본의 공중 화장실은 이렇게 설명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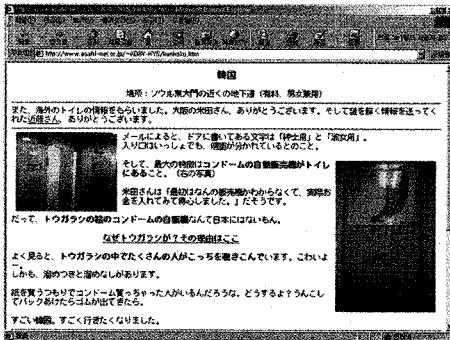
있다. "항상 화장실에 갈 때는 화장실에 종이가 없기 때문에 화장지를 꼭 가지고 가야한다. 종이 또는 타월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손을 말려야 한다. 또한 수도는 찬물만 나온다"

[그림 15]~[그림 19]은 외국의 화장실 관련 단체 및 자치단체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수 공중 화장실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각 지역별로 각각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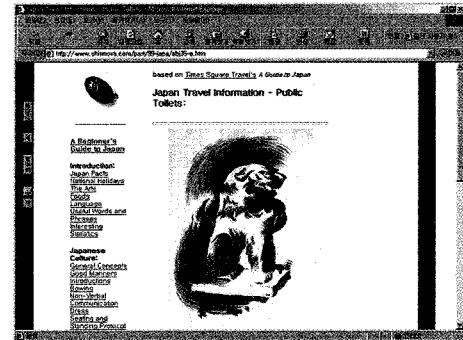
4. 화장실 관련 시설 기준 및 법규

1) 국내

국내의 화장실 관련 시설기준 및 법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일반(공중, 공용)화장실에 관련된 것이며, 둘째는 장애인, 아동, 노인



[그림13]일본에 비친 한국의 공중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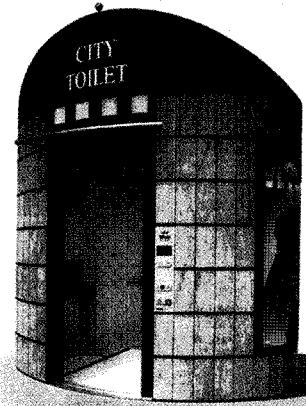


[그림14]관광안내에 나온 일본의 공중화장실

등의 화장실에 관련된 것이다.

일반 화장실에 관련된 법규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는 공중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 위생법에서는 관리기준에 대한 내용이, 도시공원법에서는 앞서와는 조금 다른 시설의 종류의 하나로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공원법, 학교보건법 등에 공중 화장실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처럼 막연한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중 화장실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규정은 특수용 화장실에 관련된 법규에 나와 있는데, 그中最가장 자세하게 나와있는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으로 그 내용은 출입구의 크기, 대변기의 칸막이 설치에 관한 내용, 대변기의 설치 위치 및 각종 보조 손잡이 등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다. 상세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공중 화장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내의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중 화장실 전체에 적용하여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공중 화장실의 관리에 대한 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공중 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고, 시설기준에 관한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그림15]뉴욕시내의 공중화장실-1

규칙,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등에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중 화장실에 관한 내용은 각 법에 흩어져 있고, 그 관리 주체도 여러 행정 부서에 흩어져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에 열거하는 표에서 가리키는 바와 같이 국내의 기준은 여러 가지 법규에 화장실에 대한 기준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며, 그 기준 또한 주로 설치 갯수 및 설치 위치에 관한 내용이며,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이 나와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 우리나라에서는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는 최소 면적, 소변기 갯수 또는 몇 인용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당 구분과 일반적인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 및 조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건축법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바닥 재료의 질감, 점자 표시, 손잡이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16]뉴욕시내의 공중화장실-2



[그림17]일본의 공중화장실

2) 외국의 경우

[그림 20]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Santa-clarita시의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는 복지관련 법규에서 공중 화장실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정의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은 호주 Brisbane시의 공중화장실 디자인 기준이며, [그림 22]는 뉴질랜드의 화장실에 대한 디자인 기준으로 과거의 공중 화장실은 안전하지 못하고, 어둡고, 음침하고, 딱딱한 모습이었다고 규정하고 추후 건설되는 공중 화장실은 좀 더 안전하고 친근감 있는 디자인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23]은 공중화장실 설계 기준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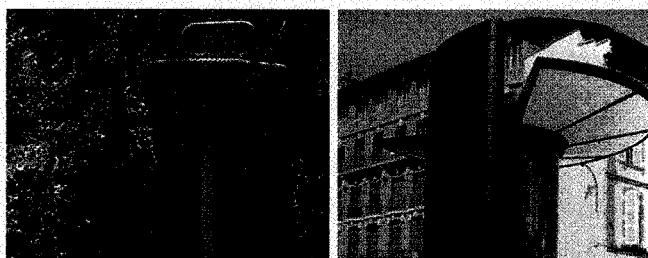
이러한 권고안에 보면, 반드시 몇 개의 개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개념의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빛과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
- ▶자연광(Skylight)에 대한 문제
- ▶화장실의 정면은 좀더 친근한 것일 것.
- ▶새로운 공중 화장실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원리에 따를 것.

현재, 화장실에 관련된 각종 규제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여러 가지 법률에 그 규정이 있으나, 공중 화장실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금배수설비가 가장 발달하고, 선구적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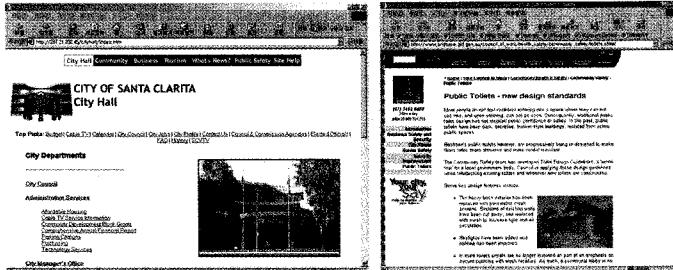
하는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도시에서는 금배수설비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미국에서 가장먼저 생긴 것은 뉴욕시의 위생규칙(Sanitary Code, 1860년대)으로, 그 주된 것은 금수계통의 오염방지, 배수계통의 관경, 위생기구의 수동식 트랩 설치 및 세면기 및 변기 등에 관한 것이다. 그 후에 통기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1875년에 위생규칙과는 별도로 금배수설비규칙(Plumbing Code)을 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설치, 시공 검사 및 감독관청의 수속과 인허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각 도시에 있어서는 지방별로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관계 단체와 메이커로부터 규칙의 표준화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1918년에 미국규격협회가 설립되어 1921년에 상무성이 금배수설비규준의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여 각종 실험연구를 행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주택 및 유사 건물의 금배수설비에 관한 권장 최저사항(Recommended Minimum Requirements for Plumbing in Dwelling and Similar Buildings)"이 상무성과 표준국에 의해 간행되었다. 1928년에는 "금배수설비에 관한 권장 최저사항(Recommended Minimum Requirements of Plumbing)"이 간행되었다.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계속 생기고, 1949년에는 미국기계학회 및 미국 공중위생 협회의 인증을 얻어 미국규격협회에서 승인한 "미국 규격 금배수설비규준(American Standard Plumbing Code, Minimum Requirement of Plumbing, ASA A-40.7-1949)"이 발표되었다. 이것이 미국에서의 최초의 금배수설비의 규격이라고 볼수 있다. 그 후



[그림18]스페인의 공중화장실

[그림19]프랑스의 예



[그림20]미국캘리포니아 Santa-Clarita시의 공중화장실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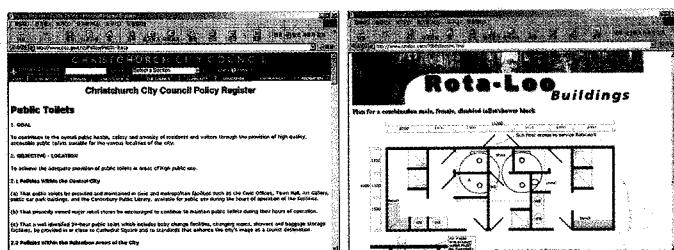
[그림21]호주의 공중화장실 디자인 기준

이것을 개정하여 미국 전국적 급배수설비규준 (NPC:American Standard National Plumbing Code, ASA A-40.8-1955)이 발표되어 앞서 발표된 ASA A-40.7이 폐지되었다.

NPC는 미국의 건물 급배수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으로 채용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규격을 만들어 1965년경부터 설계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NPC는 이후에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 그 내용을 인계하여 미국 각 도시에서는 주와 도시에서 정한 규칙과 Uniform Plumbing Code, Standard Plumbing Code, BOCA National Plumbing Code 등을 준용하고 있다. 유럽의 각국은 급배수 설비에 관한 기준은 현재의 법에서 특별하게 정해 놓은 나라는 없지만, 국가규격 혹은 단체 규격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규격으로는 독일의 DIN, 프랑스의 NF, 영국의 BS에 여러 가지 급배수설비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한 현재 EC에서는 규격의 통일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부규격은 ISO 규격과 종합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주로 공원이나 지하철역, 대합실, 터미널 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곳은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곳이지만, 실제 사람의 통행이 많은 상가지역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변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추후 공중 화장실의 설치는 이러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중 화장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은 화장실 내부에 편의 시설과 비치되어 있어야 할 물건들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화장실 실내를 밝게 처리하고 각종 비품 등을 비치해야 할 것이다.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제도는 기존의 최소한의 규정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처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설계 지침이 필요하며, 건축전문가, 화장실 디자이너, 화장실 용품 제작회사 등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맷는말



[그림22]뉴질랜드의 공중화장실 규정

[그림23]공중화장실 설계 기준의 예